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2661
결재일자	2014.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49호

지방행정주사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반경자	이정희	박기웅	김종순	11/04 유재룡	
협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관 및 규정 개정안 승인



성 동 구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 업 구 분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공약(약속)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센티브/공모사업 <input type="checkbox"/>
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이해당사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타 고 려 사 항	일 자리 <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 <input type="checkbox"/> 안 전 <input type="checkbox"/> 유지비용 <input type="checkbox"/> 바른 공공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 인 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장 애 인 <input type="checkbox"/> 디 자 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요인 <input type="checkbox"/>
타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서 울 시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언 론 홍 보 계 획	기획보도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 <input type="checkbox"/> SDTV <input type="checkbox"/> 성동뉴스레터 <input type="checkbox"/> 성동구소식지 <input type="checkbox"/> 기 고 문 <input type="checkbox"/> 전자행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S N S <input type="checkbox"/> 기타(리플릿 등) <input type="checkbox"/> 없 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p>※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관 및 규정 개정안 승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제66회 이사회 의결 후 승인 요청한 정관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기에 이를 승인하고자 함

I.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II. 개 요

□ 승인요청일: 2014. 10. 15.

※ 이사회 의결일: 2014. 9. 4.

□ 안 건: 7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주요내용
제320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안	사업계획 및 예산 송부기한 연장 (20일 전 → 30일 전)
제321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보육교사 직급구분 삭제 및 팀별 업무분장 변경
제322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업계획 및 예산 부의안 제출일 30일 전 제출 및 통지 규정 신설
제323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립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자구 수정
제324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일부개정안	유족범위에 관한 준용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문 수정
제325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졸업예정자의 자격요건 개정 (견습근무 시작 전 졸업 → 졸업 또는 졸업가능확인서 제출)
제326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수의계약에 관한 관리 강화

III. 검토 내용

1. 의안 제320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 관련 이사회 부의안 송부 기한을 회의개최일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
- 근거: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8조 제2항
- 검토의견
 -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이사회 부의안 송부기한 연장은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부합
- 검토결과: 원안 승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 임원 -----.
제27조(사업계획) ① (생략) ② 공단은 사업계획서를 이사회 개최 20일전까지 이사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7조(사업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30일-----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8조----- ----- ----- ----- -----.
제31조(예산) ① (생략) ② 이사장은 예산서를 이사회 개최 20일전까지 이사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31조(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30일-----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2. 의안 제321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2014년 2월 직제 개정에 따라 팀별 업무분장 사항 중 상호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팀별 업무분장 사항을 명확히 함
- 근거: 『공단 조직개편 계획』(경영기획실-1168호, 2014. 2. 19.)
- 주요내용
 - 보육교사직 직급 구분 삭제
 -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서 안전관리팀 소관 업무로 변경
 - 팀별 업무분장 사항 중 불명확하거나 중복된 부분 개정
- 검토의견
 - 제8조 제2항은 제13조(정원)에 따라 ‘보육교사직의 직급은 6급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승인
 - 문화복지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는 성동구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어 제18조 제11과 중복되고, 체육사업팀과 도서관운영팀에서도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팀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
- 검토결과: 수정승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직원) ① (생략) ②사무직의 직급은 2급 내지 9급으로 하며, 기술직의 직급은 5급 내지 9급, 사서전문직 및 체육전문직의 직급은 5급 내지 9급, <u>보육교사직의 직급은 6~8급으로 구분한다.</u>	제8조(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으로 구분한다.</u>	제8조(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보육교사직의 직급은 6급으로 한다.</u>
③공단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정원의 직종별 인력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 및 시간근로자 등을 직접 또는 용역업체 인력을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 ----- <u>직제규정 및 무기계약근로자 규정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간근로자</u> -----.	③ ----- ----- <u>직제규정 및 무기계약근로자 규정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간근로자</u>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직위) ① (생 략) 1. (생 략) 2. 사업2본부장은 <u>시설관리팀</u> , 주차사업팀, 체육사업팀 업무를 총괄한다. ②·③·④ (생 략)	제12조(직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시설사업팀</u> , ----- -----. ②·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직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시설사업팀</u> , ----- -----. ②·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21. (생 략) 22. <u>안전관리 및 보안</u> 에 관한 사항 23.~25. (생 략)	제14조(경영기획실) ----- -----. 1.~21. (현행과 같음) 22. <u>보안사무</u> ----- 23.~25. (현행과 같음)	제14조(경영기획실) ----- -----. 1.~21. (현행과 같음) 22. <u>보안사무</u> ----- 23.~25.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안전관리팀)(생 략) 1.~3. (생 략) 4. 공단 운영 전 사업장 시설물 <u>안전점검지도 및 사업의 경영분석</u> <u>평가에 관한 사항</u> 5. ~ 6. (생 략)	제14조의4(안전관리팀)(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안전점검지도에 관한 사항</u> 5.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안전관리팀)(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안전점검지도에 관한 사항</u> 5. ~ 6.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공시설팀) 공공시설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 략) 6. <u>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u> <u>사항</u> 7.~17. (생 략)	제15조(공공시설팀) ----- -----. 1.~5. (현행과 같음) 6. <u>공단 내부 부설주차장</u> ----- 7.~17.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공시설팀) ----- -----. 1.~5. (현행과 같음) 6. <u>공단 내부 부설주차장</u> ----- 7.~17.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시설사업팀) 시설사업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6. (생 략) 7. 성동구 <u>재활용선별장 관리·운</u> <u>영에 관한 사항</u> 8.~9. (생 략)	제15조의2(시설사업팀)----- -----. 1.~6. (현행과 같음) 7. --- <u>재활용선별장 및 재활용센터</u> ----- 8.~9.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시설사업팀)----- -----. 1.~6. (현행과 같음) 7. --- <u>재활용선별장 및 재활용센터</u> ----- 8.~9.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복지팀) 문화복지팀 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7. (생 략) 8. <u>각종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u> 9.~13. (생 략)	제18조(문화복지팀) ----- -----. 1.~7. (생 략) 8. <u>(삭 제)</u> 9.~13. (생 략)	제18조(문화복지팀) ----- -----. 1.~7. (생 략) 8. <u>(삭 제)</u> 9.~13. (생 략)

3. 의안 제322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사업계획 및 예산 부의안 제출기한 및 회의통지기한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맞추어 이사회 개최 30일전으로 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심의 기능 강화
- 근거: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8조 제2항
- 주요내용
 - 사업계획 및 예산 부의안 제출 및 회의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30일 전 제출 및 통지 규정 신설
- 검토의견
 - 상위 법규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사항임
- 검토결과: 원안 승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부의안건 및 절차) ① (생략) ②부의안건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 및 의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을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7조(부의안건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부의안이 사업계획 및 예산(예산 변경은 제외)일 경우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을 ----- -----.
제9조(회의통지) ①의장은 회의일정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이사 및 관계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② (생략)	제9조(회의통지) ① ----- ----- 7일전까지 ----- ----- ----- 다만, 부의안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일 경우 회의 개최 30일전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 ①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 ----- 제6조----- ----- -----. ② (현행과 같음)

5. 의안 제324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퇴직금 수령권을 가지는 유족 범위에 관한 준용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문을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
-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 제50조
- 검토의견: 준용규정인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수정한 사항임
- 검토결과: 원안 승인
- 신·구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2조(수령권자) ① (생략) ②제1항의 유족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준용한다.	제12조(수령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8조 내지 제50조-----.

6. 의안 제325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기능인재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극 채용하여 정부정책 준수
- 주요내용
 - 제3조 학교장 추천 자격요건 중 졸업예정자의 자격요건 일부 개정
 - 제6조 추천심사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
 - 제18조 규정과 배치되는 [별표 2] 삭제
- 검토의견
 - 학교장 추천 자격요건을 견습근무 시작 전 졸업에서 졸업 또는 졸업가능확인서 제출로 변경한 것은 기능인재의 채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타당
 - 추천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은 공단의 운영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견습직원의 보수는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별표2의 보수항목은 삭제됨이 타당
- 검토결과: 원안 승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기업에 유치하기 위하여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 ----- 공단 ----- ----- -----.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u>사장(이사장)</u> 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해당학과가 설치된 학교에서 선발분야와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u>졸업할 수 있어야</u> 하며, 만약 <u>그렇지 않을 경우</u>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2. ~ 7. (생 략)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 ----- ----- ----- ----- <u>이사장</u> ----- -----. 1. ----- ----- ----- <u>졸업할 수 있거나, 학교장이 승인한 취업계를 제출하여야</u> ----- <u>취업계 제출 후 해당학기 종료시까지 졸업하지 못할</u> ----- -----. 2. ~ 7. (현행과 같음)
제6조(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등) 추천기준, 추천 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심의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학교 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등) (삭 제) ----- ----- ----- -----.
제7조(추천서의 제출) 학교의 장은 추천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해당 <u>사장(이사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제출) ----- ----- ----- <u>이사장</u> -----.
제8조(선발 등 공고) <u>사장(이사장)</u> 은 각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기능인재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추천의 선발예정 직종·직급 및 인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지방공사·공단, 설립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발 등 공고) <u>이사장</u> ----- ----- ----- ----- <u>성동구청 및 공단</u> ----- -----.
제13조(선발시 구비서류) 기능인재의 선발 구비서류는 <u>인사규정(시행내규)</u> 등에 의한 채용에서의 구비서류에 준한다.	제13조(선발시 구비서류) ----- ----- <u>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조</u> ----- -----.

7. 의안 제326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 조달구매를 제외한 모든 구매를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현황에 맞추어 구매요구 관련 규정을 구매 및 계약체결 규정으로 개정
- 계약심의위원회를 규정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현행 직제에 부합하도록 직위 개정

○ 검토의견

-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사항임

○ 검토결과: 원안 승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54조(구매요구)</p> <p>①구매 및 계약요구시 각 사업부서는 예산 추산후 경영기획실에 구매요구를 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요구는 공고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20일 전에 하여야 한다.</p> <p>③구매 요구시에는 조사자와 담당팀장이 각각 서명 날인한 가격산출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조, 수리를 요하는 계약요구 시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원가내역서 등의 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신 설></p> <p>⑤ <신 설></p>	<p>제54조(구매 및 계약체결)</p> <p>①계약체결시 각 사업부서는 경영기획실에 계약 담당 직인 날인요구를 하여야 한다.</p> <p>②----- 검토기간 ----- 계약체결일자로부터 3일 전까지 -----.</p> <p>③계약서 원본은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고,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한다.</p> <p>④구매 시에는 조사자와 담당팀장이 각각 서명 날인한 가격산출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조, 수리를 요하는 계약체결 시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원가내역서 등의 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조달구매시에는 예산 추산 후 경영기획실에 구매요구를 하여야 하며, 담당팀장이 서명 날인한 물품매입요구서를 경영기획실에 제출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정안
<p>제55조(물품구매심사)</p> <p>①물품구매의 효용증대를 위해 <u>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②전항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u>특허품이나 신 개발품으로서 유사품목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사제품 중 적어도 2종 이상에 대하여 가격, 성능, 이용편이도, 유지보수의 용이도 등을 비교 검토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계약심의회위원회의 위원장은 <u>상임이사</u>가 되며 위원은 <u>경영기획실장</u>을 비롯한 각 팀장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p>	<p>제55조(계약심사)</p> <p>①계약 -----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1,500만원 이상의 용역·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제외)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또는 공단 시설물 임대 연장계약의 -----.</p> <p>②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유사품목·업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2개업체 ----- ----- ----- ----- -----.</p> <p>③ ----- <u>사업1본부장이</u> ----- ----- <u>사업2본부장</u> ----- <u>실·팀장</u> ----- ----- -----.</p>
<p>제56조(결과통보) <u>경영기획실은 구매 및 계약결과를 각 사업 부서에 통보한다.</u></p>	<p>제56조(결과통보) ----- 계약심사결과를 해당 -----.</p>

IV. 검토 총평

- 준용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단순 용어 개정 사항은 승인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조항은 개정 없이 현행대로 하여 수정 승인
- 향후 규정 개정시에는 이사회 상정 전 구청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단계 필요

V. 승인내역

의안번호	의안명칭	승인사항
제320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안	원안 승인
제321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수정 승인
제322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승인
제323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립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수정 승인
제324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승인
제325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승인
제326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승인

붙임 공단 이사회 부의안 1부. 끝.